

노근리사건 유족 결정(비결정) 통지서

신청인	성명 (한자)	()	생년월일			
	주소					
	희생자와의 관계	의	전화번호			
희생자	성명 (한자)	()	생년월일		성 별	[]남 []여
	신청 사유	[]사망	년 월 일	사망		
		[]행방불명	년 월 일	행방불명		
		[]후유장애	년 월 일	부상		
	당시 등록기준지					
	당시 주소					
유 족	성명 (한자)	생년월일	희생자와의 관 계	등록기준지	주소	
			의			
			의			
			의			
			의			
심의·결정 내용						

「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노근리사건 유족으로 결정(비결정)되었음을 통지합니다.

년 월 일

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위원장

직인